

문서번호	홍보전산과-15416
결재일자	2016.4.26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주무관	정보통신담당	홍보전산과장	행정국장		
김혜진	주동근	유인욱	04/26 손정수		
협 조					

-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보호조치 기준 체계 정립을 위한 -
성북구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 계획



2016. 4.

홍보 전산과
(정보통신팀)

-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보호조치 기준 체계 정립을 위한 -

성북구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 계획

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(안전조치 의무)에 근거,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 우리구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기준 체계를 정립,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.

I 근거 및 배경

□ 관련근거

- 1)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(안전조치의 의무)
-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)
-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(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-7호/2014.12.30. 개정)

□ 추진배경

- 개인정보 유출 예방 및 철저한 관리를 통한 정보주체 권익 보호
- 2)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아래 5가지 조건이 모두 포함된 중장기적 관점의 계획이 필요

연 번	내 용
1	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
2	개인정보보호 책임자, 개인정보 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
3	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
4	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
5	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1)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(안전조치 의무)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, 도난, 유출,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,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, 관리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2)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3조(내부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)에 의거

II

관 련 내 용

□ 내부관리계획의 수립

○ 주요내용

[제1장] 총 칙

[제2장]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

[제3장]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

[제4장]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

[제5장] 개인정보보호 교육

[제6장]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

[제7장] 그 밖의 개인정보 보호

[제8장] 개인정보 침해대응 및 피해구제

□ 내부관리계획의 공개 및 이력관리

○ 공개(알림)

- 개인정보처리자 및 관련자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행동을 취할 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부 계획(지침)을 공표
- 공개방법
 - ① 공문을 시행하여 전부서, 동 주민센터, 구의회, 보건소, 성북구도시관리공단, 성북문화재단에 내부관리계획 수립을 공표
 - ② 성북구 대표 홈페이지(www.seongbuk.go.kr)에 게재하여 관련 사실을 공개

○ 이력 관리

- 홈페이지에 내부관리계획의 수정 이력을 공개

III

향 후 계 획

□ 내부관리계획의 수립, 공개 및 이력관리 : 2016년 4월중

붙임 : 성북구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 계획 1부. 끝.